



소방기본법

[시행 2022. 1. 20.] [법률 제18493호, 2021. 10. 19., 일부개정]

- 소방청 (대응총괄과-총괄,소방활동,소방력동원) 044-205-7562,7572
- 소방청 (119종합상황실-119종합상황실운영) 044-205-7082
- 소방청 (기획재정담당관-국고보조) 044-205-7217
- 소방청 (혁신행정법무담당관-소방기관설치) 044-205-7247
- 소방청 (보건안전담당관-손실보상) 044-205-7412
- 소방청 (화재대응조사과-소방용수,화재조사,의용소방대) 044-205-7472,7476,7480
- 소방청 (구조과-생활안전활동) 044-205-7617
- 소방청 (화재예방총괄과-예방, 화재경계지구, 특수가연물, 소방안전원) 044-205-7442
- 소방청 (생활안전과-소방교육·훈련,소방박물관,소방안전교육사) 044-205-7666,7670,7667
- 소방청 (소방산업과-소방산업육성) 044-205-7502

제21조의2(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) ①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(이하 "전용구역"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야 한다.

-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·방법,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,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8. 2. 9.]